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대학원은 현재와 미래사회를 생산적으로 열어갈 진리를 탐구하고, 지식 정보화고도산업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창출과 응용을 우선으 로 하는 학문을 교육하며, 인류정신문화의 성숙과 국가지역사회의 지식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.

제2조(설치 대학원) ①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.

②특수대학원에는 신학대학원, 교육대학원, 경영행정대학원이 있다.

제3조(학위과정) ①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"석사과정"이라 칭함)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"박사과정"이라 칭함)을 둔다.

②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
③본 대학원과 연구기관·산업체·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(이하 "협동과정"이라 칭함)을 둘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「학·연·산·관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4조(학과와 정원)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(학과/전공)과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